

◎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4-1507호

-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-
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83호(2008.10.30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94호(2008.11.0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39호(2023.02.02.)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4-115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고시된 동대문구 신설동 92-5번지 일대 『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』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2127-4295)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실(☎6006-0855) 또는 신설제1 주민대표회의 사무실(☎921-6058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21일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24.11.21.(목) ~ 2024.12.06.(금) [15일간]

나. 공람장소

- 1) 동대문구청 4층 주거정비과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) 및
- 2) 신설제1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(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하정로5길 5, 미영빌딩 2층)

다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
- 1) 사업명칭 : 신설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
- 2) 사업시행자
 - 성 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(대표 이한준)
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
- 3)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2-5번지 일대
- 4) 시행면적 : 11,204.15㎡
- 5)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6개월
- 6) 건축계획
 - 건폐율 29.14%, 용적률 298.86%, 연면적 45,799.47㎡, 최고높이 70.85m
 - 지하2층/지상24층, 공동주택 3개동(299세대) 및 부대복리시설
- 7) 관계도서 : 생략(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.)

라. 기타사항 : 본 사업시행계획은 공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,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(부서)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공고 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. 끝.